

통영관광개발공사 전문직 직원 공개채용 재공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관광도시를 견인하는 일류 공기업” 으로 비상하는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함께 근무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합니다.

2017. 7. 15.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

1. 채용개요

경력사항	직종	직렬	직급	인원	비고
무관	전문직	체육	계약직	1	· 통영실내수영장 수영강사 1

2.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 필수자격과 직무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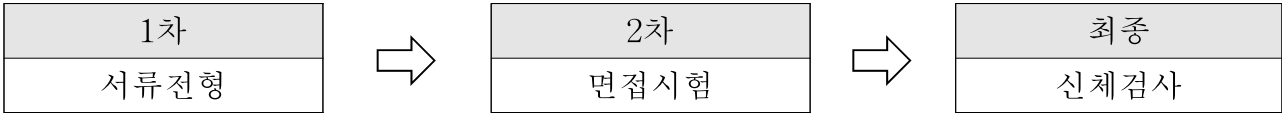
직종	직렬	필수자격	직무자격
전문직	체육 (수영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자(붙임1참고) · 기타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 및 취업이 제한되지 않은 자 · 학력, 성별, 나이, 신체조건, 전공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자로 해당 업무 실무 가능자(아래표 참조) · 주소지 제한 없음.

나. 응시가능 자격

직종	직렬	자격증
전문직	체육	· 1~2급 전문체육지도사(수영) 또는 1~2급 생활체육지도사(수영)

4. 임용직급 : 전문직 마감

5. 채용절차



6. 시험일정

공고 및 접수	시험구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7.15.~ 8.20.	서류전형	-	8.21.	8.22.
	면접시험	8.22.	8.24.	8.25.

※ 시험 관련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corp.ttdc.kr) '채용정보' 에서 공고합니다.

7. 보수 및 근무조건

가. 급 여 : 공사 보수규정 및 관련규정에 따름.

나. 복리후생 : 근무복, 사내근로복지기금, 4대보험 가입

다. 근무조건 : 주 40시간

※ 공사 취업규정 등에 의하며 근무여건에 따라 휴일 및 연장근무 가능

라. 근로계약

○ 전문직(수영강사)는 2년단위 근로계약 후 근무평가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 체결.

8.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경남 통영시 발개로 205(도남동), 통영관광개발공사(케이블카 탑승장 2층)
경영관리팀 인사담당자 앞(우편번호 53075)

다.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1부.(※ 남자는 초본 1부 추가제출 : 군필사항 표시)
- 3) 자격증 사본 1부.
- 4) 경력 증빙서류 각 1부.

9.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우대

※ 대상여부 및 가점비율은 본인이 직접 관련기관 확인후 증빙서류 제출.

나. 전문자격증 소지자, 북한이탈주민, 통영시민 우대

10.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를 통해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응시자의 실수, 착각으로 인해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 이 취소될 수 있음.
-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불가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다. 채용예정인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마. 최종합격 후 6개월 내 임용자가 퇴사하여 결원 발생시 채용예정인원 범위내 차 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
- 바. 경력인정을 원할 경우, 동일경력에 대한 각호 증빙서류를 각각 필히 제출해야 함.
 - 1)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중 택1
 - 2) 근로소득납세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중 택1
- 사. 기타 문의사항은 공사 경영관리팀(649-3802) 인사담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공사 인사규정(응시 결격사유) 1부.
2. 응시원서(전문직) 1부. 끝.

공사 인사규정(응시 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